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방법에 관하여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17.~4.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8항제2호 중 “일부”를 “재구매하거나 일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u>단서 신설</u> >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생략)	⑧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재구매하거나 일부 ----- ----- 3. (현행과 같음)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전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613